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칙

[초안 2018.04.01.] [시행 2018.04.28.]

[제1차 개정(일부)2019.04.06.]

[제2차 개정(일부)2019.10.26.]

[제3차 개정(일부)2020.04.27.]

[제4차 개정(일부)2021.04.05.]

## 목 차

제 1장. 총칙

제 2장. 미래융합대학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

제 3장.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제 4장.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 5장. 집행국

제 6장. 재정

제 7장. 선거

제 8장. 운영감사위원회

제 9장. 미래융합대학 동아리

제 10장. 회칙개정

제 11장. 비상대책위원회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하 미래융합대학 학생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회는 미래융합대학 내의 자유로운 자치활동과 자주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사 발언과 이에 따른 결의를 통하여 대학문화를 창출하고 학생 본분에 입각한 자립정신을 설립하여 미래융합대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설치)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내에 둔다.

###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융합공학부(융합기계공학전공, 건설환경융합전공), 융합사회학부(헬스피트니스 전공, 영어전공, 문화예술전공, 벤처경영전공)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상태에 있는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학생자치 활동과 본회의 민주적인 운영으로 발전시키며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은 본회의 학생자치 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에 대하여 학교 당국의 관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부담의 의무를 갖는다. 단 재정부담이라 함은 미래융합대학 학생회비 납부를 말한다.
5. 본 회의 회원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단과대학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등 자치기구 내 회의체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 6조 (구성)

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미래융합대학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국,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과 학생회를 둔다. (단, 본 회칙에 의한 구성 이외의 신규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단학대회에서 신고 및 승인에 의해 회칙에 의거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 제 2장 미래융합대학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

### 제 7조 (지위)

단과대학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이하, 단학대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제 8조 (구성)

1. 단학대회는 단과대학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모든 직선 대표자(반대표 이상)들로 구성된다. 단, 학생 회원으로서 재정부담의 의무를 다한 구성원들에게만 발언 및 의결의 권리가 부여된다. 이 중 재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구성원은 아래 항을 제한한다.
  - 가. 학생회비 예산안의 발언 및 의결
  - 나. 학생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의결
2. 명시된 구성원이 아닌 회원의 경우에도 구성원들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참관 자격이 부여된다.
3. 대리출석은 각 학과의 부학년대표를 원칙으로 하며 부재 시 3일 전 집행위원장에 보고하여 대리출석자를 지정하여 출석 시 참석으로 인정한다. (부학년대표가 미선출 된 과는 명시된 구성원이 아닌 회원이 참가할 수 있으나 구성원들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가. 대리출석자는 안전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나. 대리출석자는 참석하지 못한 대표자에게 의결사항을 2일 이내 보고할 의무가 있다.
  - 다. 대리출석자는 본회의 익명 혹은 비밀을 요하는 내용을 무단배포했을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 제 9조 (의장)

단학대회 의장은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정학생회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 제 10조 (소집)

1. 본회는 재적 대표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학과학생회별 대표 전원 불참 시 1/2 이상이어도 미달로 본다.
2. 정시 단학 대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봄학기, 가을학기 개강 후 45일 이내로 실시한다.
3. 임시(비상)단학대회는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요구 혹은 단학대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단학대회 소집과 안건은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3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5.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소집일을 연기하거나 서면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 및 권한)** 단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결권
2.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의 심의 의결권 (학생회비, 졸업 준비비, 교지비 등)
3. 단대 집행국 각 국장의 해임 의결권
4. 운영위원, 집행국장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권
5. 단대 학생회 회칙에 규정된 단체의 사업계획, 사업 보고에 따른 예산, 결산의 승인권
6. 신규 자치단체의 승인권
7. 각 자치기구의 내규심의 승인권
8. 집행국 국장의 임원 일괄 인준권
9. 학칙 개정 건의 및 사전 협의, 동의권
10. 단대 학생회 회칙에 규정된 단체의 감사권
11. 단대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탄핵소추권
12. 각 자치기구의 회장 및 위원장 탄핵소추 및 결정권
13. 감사 결과 부정 발견 시 해당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 및 결정권
14.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인준권
15. 기타 단학대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 12조 (의결 정족수)**

1. 정족수 - 단학대회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표자 1/2 참석과 참석 대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비상 정족수 - 비상 단학대회는 회원 참석 수와 관계없이 개최하고 의결된 사항은 단학대회와 동일한 효력을 낸다.
3. 의결의 위임 - 의결 정족수 미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하지 못한 사항의 의결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3장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제 13조 (지위)**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는 상임 의사결정기구이다.

## 제 14조 (구성)

단운위는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각 전공별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학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한다. (단, 미래융합대학 집행국 또는 단운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회의 회원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참관할 수 있다.)

## 제 15조 (위원장)

단운위의 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궐위 시 미래융합대학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 제 16조 (소집)

월 1회씩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비상)소집은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참석 수에 관계없이 개최하고 의결된 사항은 단운위 의결안과 동일 효력을 낸다.)

## 제 17조 (업무 및 권한)

1. 회칙개정 발의권
2. 미래융합대학 단학대회 소집 요구권
3.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선정권
4. 본회 활동과 각 과 학생회의 활동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
5. 소집요구자가 발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6. 단학대회로부터 위임을 받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

## 제 18조 (개회 및 의결)

1. 단운위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임시소집은 관계없이 개회한다.)
2. 안이 2가지인 경우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 시 가결한다.
3. 안이 3가지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된 안으로 의결한다.

## 제 4장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 제 19조 (지위)

1.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단학대회 의장, 단운위 의장,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확대운영위원회 위원, 집행국 의장이 된다.
2.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궐위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직임을 대신한다.

다.

3. 단 2항의 기재 사항이 실효가 없는 경우 단학대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임을 대행한다.
4.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중앙 사업이나 행사의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무를 진다.

## 제 20조 (임기)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해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미선출 시 차기 선출일(최대 3월)까지로 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그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부칙 제 2조에 의거하여 본 항의 효력은 개정 후 차회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부터 적용한다.

## 제 21조 (업무 및 권한)

1. 미래융합대학 단학대회, 단운위, 집행국 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2.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단운위의 심의를 거쳐 단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3. 회칙 개정안은 단운위의 심의를 거쳐 단학대회에 상정한다.
4. 집행국 임원은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이 선임하여 단학대회의 동의로 임명한다.
5. 집행국 임원의 해임 건의 권리를 가지고 단학대회의 동의로 새로 임명된다.
6. 학생회 활동에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외활동에 참여한다.
7. 학생자치 및 복지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단학대회를 거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9. 기타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 22조 (부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정학생회장 궐위 시, 그 권한을 승계한다.

## 제 5장 집행국

### 제 23조 (지위 및 자격)

집행국은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며 그 자격은 재정부담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 제 24조 (구성)

집행국은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각 집행국 국장, 차장 및 국원으로 구성한다.

## 제 25조 (임기)

집행국의 임기는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궐위 시에도 집행국의 임기는 계속된다.)

## 제 26조 (업무 및 권한)

1. 단학대회 및 단운위에서 결정된 사업을 진행한다.
2.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의 제반 사업 계획보고서와 예산안 및 결산 보고서를 단운위에 제출한다.
3. 집행국은 제반 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단, 정학생회장이 임의로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 가. 사무국 : 행사, 사업을 기획하고 사무, 회계 등의 제반 업무 처리 및 진행 등을 담당한다.
  - 나. 문화국 : 행사, 사업의 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한다.
  - 라. 복지국 : 학우들의 복지환경 개선과 의견 수렴 및 개진 등을 담당한다.
  - 마. 홍보국 :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연합 및 대내·외 학생들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담당한다.

## 제 6장 재정

### 제 27조 (경비)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전항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 28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전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까지 1년으로 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회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실시한다. (회계결산 기간은 11월 마지막 주이며, 회계 결산 기간 내에 학생회비 지출은 지양해야 하며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 제 29조 (학생회비)

1. 본회의 회비는 단학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2. 회비는 매년 1회 납부받는다. (과 학생회비는 각 과의 자율에 따른다.)

### 제 30조 (예산편성 및 심의)

예산은 각 집행국이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단운위에서 심의 조정하고 단학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제 31조 (예산의 집행)

1. 예산 수립 후 통과된 예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단운위의 심의를 거친다.
2.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경우 각 행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단운위에서 심의한다.

## 제 7장 선거

### 제 32조 (목적)

본장은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3조 (선거권)

1. 선거권은 미래융합대학의 재학생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당해 학기 등록자에 한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가. 단학대회 위원 중에서 임기 중 사퇴 또는 탄핵을 당한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단, 후보등록을 위한 사퇴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 34조 (피선거권)

1. 피선거권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가. 정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한다. (4학기란 봄학기, 가을학기만을 의미한다.)
  - 나.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한다. (2학기란 봄학기, 가을학기만을 의미한다.)
  - 다. 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모든 학과(부)의 재학생의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라.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선거 시 후보의 자격은 당해 재정부담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재정부담이란 미래융합대학 학생회비를 말한다.)

### 제 35조 (선거방법)

1.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원칙에 의해 실시한다.
2.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공동 입후보하고 본회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후보자가 1조일 경우 4학년을 제외한 회원 40% 이상의 투표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4학년이 투표할 경우 투표 인원내 추가하여 투표율 계산한다.)

### 제 36조 (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적정 시기에 실시한다.)

### 제 37조 (임기)

1. 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해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차기 선출일 (최대 3월)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 : 보궐선거는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궐위 시 잔여 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 한하여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이내일 때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제 38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미래융합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국 및 과 부학생회장 이상 직선 대표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투표일로부터 35일 전에 구성한다.
2. 학과별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과 학생회장과 대표자에 의해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은 선거 종료와 함께 완료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과대학 정학생회장이 된다. 단, 단과대학 정학생회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모두 궐위 시에는 단운위에서 논의하여 선출한다.

### 제 39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0조 (선거시행세칙)

1.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 시행세칙에 따른다. (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다.)
2. 후보자 등록서류 결정
  - \* 현재 등록서류
  - 재학증명서 1통

- 성적증명서 1통
  - 본회의 회원 1/10인 이상의 추천서 (단, 모든 학과(부)의 재학생의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소견서(소정양식)
  - 공정선거에 관한 서약서(소정양식)
  - 약력, 공약사항(홍보용)
  - 선거운동원 명단(소정양식)
  - 포스터(홍보용)
- \*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등 단운위 재적인원 및 집행국장은 후보등록을 위해 사퇴서(후보자 등록용)를 제출한다.
3. 후보자 유세기간
  4. 부정선거에 관련한 세부 지침
  5. 등록 후보가 복수인 경우, 후보 간 득표수 차이가 무효표보다 적을 시 재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제 8장 운영감사위원회

### 제 41조 (목적)

학우들의 관심과 비판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회와 자치기구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본 회 및 산하 기구, 학과학생회를 감사한다.

### 제 42조 (업무)

공약 이행, 회칙준수, 예·결산 등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감사 항목에 대해 위반한 단체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징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43조 (권한)

운영감사위원회는 미래융합대학 내의 모든 단위의 학생회 및 자치기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은 이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의 결과에서 부정이 드러난 경우 운영감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내부적인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 제 44조 (구성)

운영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단위별로 선출된 3명 이상의 운영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45조 (위원장)

운영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의 의무를 다하고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단학대회에서 인준받으며 중앙재정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 제 46조 (절차 및 시기)

1. 운영감사위원장은 감사가 이루어지기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감사의 시기는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실시, 종료한다.

#### 제 47조 (기타사항)

1. 운영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보고서 및 감사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전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전체 학우에게 공개해야 한다.
2.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일반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치기구의 재무 상태와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감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3. 감사 결과는 탄핵요건이 될 수 있다.
4.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감사시행세칙으로 규정하여 단학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 9장 미래융합대학 동아리

#### 제 48조 (목적)

본 장은 본회 회원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개별주체 욕구를 충족시키며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본회 전체의 이익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운영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 제 49조 (구성)

1. 동아리 구성인원은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으로 동아리 대표자와 회원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2개 학과(전공)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동아리 최소 구성 인원 중 동시에 3개 이상의 동아리를 가입한 구성원의 경우 최소 구성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 50조 (운영 규정)

미래융합대학 동아리의 세부 운영 규정은 미래융합대학 동아리 운영 세칙으로 규정하여 단학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 10장 회칙개정

#### 제 51조 (발의)

회칙 개정은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이 단운위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거나 단학대회의 1/10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한다.

#### **제 52조 (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이 이를 공고하되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 53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22일 이내에 단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제 54조 (공포)**

단학대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7일 이내에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이 이를 공포 및 게시한다.

### **제 11장 비상대책위원회**

#### **제 55조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립요건)**

본 장은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선출에 문제가 있어 선거가 유보되어 재선거를 진행하거나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하여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적용하며, 적용 조건의 해소 시 즉시 해산한다.

#### **제 56조 (구성)**

1.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은 당 해 단운위 재적인원 중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고, 단학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비대위 위원은 당 해 단운위 재적인원으로 한다.

#### **제 57조 (권한)**

1. 비대위 위원장은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부칙**

#### **제 1조 (시행)**

본 개정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본 회칙에 의하여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본 회칙 효력 발생 이전에 구성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전 회칙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 3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 및 단운위에서의 의결에 따른다.